

마을회의록을 통해 본 마을제의 변화

-안덕면 사계리의 경우-

강정식**

<차례>

- I. 마을회의록의 의의
- II. 마을제 관련 기록의 양상
- III. 회의록을 통해 본 마을제의 변화 양상
- IV. 마을제 연구의 보완과 확장을 위하여

I. 마을회의록의 의의

요즘 필자는 사계리 마을회의록에 대한 조사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1) 이러한 문서를 살피는 일은 필자의 관심사와 그다지 많은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충실한 기록을 남기고 보존해 온 마을 사람들의 뜻을 기리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을회의록은 마을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제, 토론, 의결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마을회의록의 함의를 넓혀 실제 회의록에는

* 이 글은 본래 2005년 4월 16일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린 제주학연구 자모임에서 발표하였던 것이다.

** 새주내학교 국어교육과

1) 이 작업은 고광민 선생(제주대박물관 학예연구사)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먼저 자료를 찾고 그 의미를 발견한 뒤에 필자에게 함께 공부할 것을 권고해준 덕분에 회의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글에서 어떠한 성과를 얻은 바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고광민 선생의 몫이다.

들어 있지 않으나 회의를 통하여 다루어졌거나 회의 결과를 따로 정리한 문서들도 함께 포함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마을회의록 전반에 대한 사항, 즉 보존상태, 편제, 기록 방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마을제 관련 기록에 한정하여 다룬다.

마을회의록이 지닌 의의를 강조하여 말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는 일부터 하고자 한다. 실증적인 자료이므로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을회의록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그 동안 학계의 관심을 끈 마을 문서는 호적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시기로 보면 근대 이전의 문서로 제한된다. 마을에서 생산된 문서 가운데는 근세 이후의 문서도 있지만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마을 회의록이다.

마을회의록은 민간의 사정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생활의 주체가 직접 기록한 것이어서 사실과 괴리되지 않는다. 그동안 근세 이후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는 상급 기관의 통계나 신문기사가 이용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자료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나름대로 한계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사실성이 떨어지는 수도 있겠고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신문기사는 그 소재가 사정에 따라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마음 놓고 이용하기 어렵다.

마을회의록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사계리 마을회의는 다양한 안건을 다루고 있다. 주요 안건은 별제와 포제 제관선정, 마을 대표 선출, 마을 공금의 수입과 지출, 기타 각종 마을사업 등에 대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기록 양상이 다르기는 하되 토론 과정과 그 결과를 충실히 남기려고 한 것은 한결같다.

사계리 마을 회의록은 1918년부터 최근 것까지 쌓여 있다. 1918년부터 1945년까지는 회의록 첨부 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금회계부와 증빙서류가 주를 이룬다. 1946년 12월 이후부터는 원형을 간직한 회의록이 발견된다. 지금까지 정리된 것은 1969년 회의록까지이다. 그 이후의 회의록도 있지만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다.²⁾

이 글에서는 1918년부터 1969년까지 이루어진 유교식 마을제에 관한 기록에 한정하여 살펴두고자 한다. 사계리에서는 별제와 포제 두 차례 마을제를 지냈다. 물론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달랐다. 두 제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도 차이가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은 기록의 문면을 통해서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행간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회의록을 토대로 관련 사실을 추적해보아야 제대로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 조사가 미진한 실정이다. 다음 기회에 보충하려 한다.

II. 마을제 관련 기록의 양상

사계리 마을제는 무속식, 유교식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무속식 마을제로는 큰물당에서 벌이던 당굿이 있었다. 이것은 오래 전에 소멸되었다. 신당 관련 내용이야 애초에 마을회의록에서 찾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교식 마을제로는 正月 別祭와 六月 酬祭가 있었다. 현재는 포제와 별제에 합사하여 정월에 마을제를 지내고 있다. 별제와 포제는 마을회의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²⁾ 이 시기 이후의 회의록은 이전 시기 회의록과 성격이 다르다. 이전 시기 회의가 주민 모두 참여하는 총회였다면 이후의 회의는 대개 마을 임원, 유지 중심의 회의이기 때문이다.

마을제 관련 사항은 크게 보아 집사 선거 건과 제비 관련 건 두 가지이다.

1. 집사 선거 건

마을제 관련 안건을 독립적으로 다룬 것은 모두 집사 선거 건이다. 특히 別祭 집사 선거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확인된다. 반면 포제 집사 선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기록을 발견하기 어렵다.

별제 집사 선거 건은 매년 정기적으로 다루어졌다. 그것도 대부분 가장 우선적인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같은 회의에서 다른 안건들은 매해 바뀌었다. 그러므로 별제 집사 선거를 제1 안건으로 다룬 회의는 별제 향회라고 보아도 좋겠다.

별제와 관련된 기록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1947년 1월 15일 오전에 열린 회의의 기록이다.³⁾ 망실된 부분이 있어 모든 내용을 알아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司會 金奉文氏로부터 執事 選舉件 附議한니 향...(亡失)…는 司會의게 選舉權을 一任함과 同時 異議...(亡失)…⁴⁾

망실된 부분이 있으나 다른 해 기록을 함께 전주어 보면 대체적인 시정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별제 집사 선거에 관한 안건을 부의하니 향원 모가 사회인 區長에게 선거권을 일임하였다는 말이다. 다음 해 기록을 보자.

3) 아직 문서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잠정적인 언급일 수밖에 없다.

4) 맞춤법은 그대로 두고 띄어쓰기만 수정한다.

議長 李麒年로부터 本件 選舉를 附議하니 鄉員 一同은 綱位 及 前頭老 各位의게 一任이 有하니 前頭老 各位는 區長의게 依賴하였다 區長은 不得已 依賴를 밧다서 左記와 如히 祭執事 選舉가 有하다
別祭執事 別紙와 如함⁵⁾

역시 직접 선거를 하지 않고 마을 원로인 綱位와 頭老에게 집사 선정을 일임하였는데, 이들은 다시 마을 대표인 구장에게 집사 선정을 위임하고 있다.⁶⁾ 설령 구장이 집사를 선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고 해도 구장이 집사를 마음대로 지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매해 정월 총회를 열어 같은 안건을 부의하고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구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는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집사를 선정하는 절차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다.

집사 선거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개는 구장이나 이장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나 구장이나 이장에게 위임된다고 해서 실제로 구장 혼자 집사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회의록 상으로는 총회에서는 강위와 두노 등 원로들에게 선정을 위임하고 이들은 다시 구장에게 일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구장이 혼자 집사를 선정하는 일은 없었다. 대개 강위와 두노 등 원로들과 함께 의논하여 집사를 선정하였다. 이는 촌로들의 기억과도 일치한다.

가능한 대로 무난한 선정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매번 안건을 부의하면서도 별다른 토론 없이 마을 대표에게 위임하고 만 것은 결국 만일 집사 선정이 잘못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직접 선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장이 '不得已 依賴'를 받았다고 한 내서 집사 선정이 특별한

5) 別紙라 함은 <執事記>를 말한다.

6) 綱位는 구장과 부구장 혹은 이장과 부이장을 지칭하고, 頭老는 강위를 역임했던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

권한이라기보다 무거운 책무로 인식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권례에 따른 절차 준수, 적절한 안배 등의 원칙이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

다음은 집사 선거 건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정리한 것이다.(안전1 2에 대해서는 뒤에 거론한다.)

1949년	綱位	(안전1)
1950년	綱位 頭老 → 區長	(안전1) ⁸⁾
1951년	綱位	(안전1)
1952년	里長	(안전1)
1953년	從前例	(안전1)
1954년	綱位	(안전1)
1955년	頭老	(안전2)
1969년	전형위원	(안전2)

절차 전형위원을 따로 두어 선정을 하고 승인을 받는 간접선거의 형태로 바뀌어 간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1956년부터 1968년까지는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확인되는 기록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시기는 1969년부터이다.

다음은 1969년 2월 16일 회의기록이다.

里長 : 집사 선정 方法을 부의하다.

7) 물론 직접 선거 방식으로는 집사를 선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매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는 처지에 직접 이름을 거명하며 가부를 거론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재관 숫자가 많을 경우 일일이 선거하기도 적절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도 대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집사를 선정한다.

8) 총회에서 綱位와 頭老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하자 綱位와 頭老가 다시 區長에게 위임하였다.

組合長：一年에 한번 지내는 중요한 별제 제집사(諸執事) 선정인 만큼 전형위원을 선정하여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집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다.

一同 찬성하다.

里長：전형위원 선정 방법을 부의하다.

組合長：전형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이장이 자백하는 것이 좋다고 하다.

일동 찬성하다.

전형위원은 아래와 같다.

이관형 이성환 강일화 김영하 임창하 리장 부리장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집사선정은 별지와 여하하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이유는 쉽사리 파악하기 어렵다.⁹⁾ 종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참석률이 극히 저조해진다. 이에 따라 마을 회의도 주민 총회에서 임원 및 유지회로 바뀌어 간다.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가 줄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제에 대한 관심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미신타파, 미풍양속과 의례간소화 권장의 영향으로 포제를 별제에 합사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방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관례에 대한 이견은 이미 그 이전 시기부터 제시되기 시작한다. 1955년 회의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李滄鍵. 其案에 同意하면서 保參하고자 합니다 그전 例를 보면 前頭老가 없으면 首執事를 지내지 못함은 遺憾之事니 今回에 限하며서는 그런 관習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가 生覺합니다

9) 커다란 변화인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전형위원을 이장이 선정하도록 하였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전형위원에 포함된 사람은 대개 두노와 강위로 보이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차상 전형위원을 따로 선출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 뒤에 집사를 선정하도록 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其案이라 함은 기존 관례를 따르자는 案을 말한다. 수집사라 함은 헌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헌관은 구장 혹은 이장을 역임했
이가 맞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前頭老가 아니면 수집사를 지내지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다. '今回에 限하'여라는 단서가 놓
는 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그동안 지속되어 온 관례에 대한 검토를
구하는 의견이 제시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주목해 두기로 한다.¹⁰⁾

포제에 대한 회의 기록은 드물다. 포제를 지내지 않았거나 회의가
있단 것도 아닌 듯하다. 포제는 1970년경까지 지내고 있었다. 이는 1
년부터 1962년까지 회계장부에 포제 물종대에 대한 기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醕祭 관련 토의 내용은 1951년 7월 17일 회의록에서야 발견된다.
날 회의의 첫 안건으로 포제 집사 선거의 건이 부의되고 논의되었다
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綱位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는 결정이 내리
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1952년, 1953년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그러
1954년부터는 포제 관련 회의 기록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포제가 지
된 것은 아니었다. 그 뒤에도 포제를 지냈다는 사실은 물종기와 집사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포제를 지내면서도 포제 관련 회의 기록이
없는 셈이다. 별제 관련 기록이 꾸준히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
이다.

2. 제비 관련 건

별제 비용은 본래 家基糞로 충당하였다. 가기세는 마을 소유의
집을 지어 사는 사람들로 부터 받는 돈이다. 마을회의록에는 가기세를

10) 하필 이 해에 한하여 반드시 두노여야 헌관이 될 수 있다는 관례를 없애자고
정은 알기 어렵다.

렇게 운용하며 그 가운데 얼마를 별제 비용으로 쓸 것인지 논의한 사례가 없다. 그만큼 오래 전부터 관례화된 것으로 보이며 변화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기세를 걷는 '벤홀' 지경이 마을 소유의 땅이 된 뒤에나 가능한 일이다. '벤홀' 지경이 형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의 일이다. 그러므로 가기세의 유래는 40년 이상을 넘지 못한다. 그 전에는 다른 마을들처럼 가호별로 일정한 양의 곡식이나 금전을 걷어 충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기세는 해마다 변동이 많았다. 다음은 회의록과 회계장부(里有公金十算書)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단위 : 환/원)

年度	1939	1941	1942	1943	1944	1945
	- 1947	1948	1949	1956	1957	1958
金額	10.50	11.60	15.20	23.80	31.80	31.80
	- 330	3,600	4,150	9,850	10,500	10,350

1947년과 1948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그 까닭은 1948년 8월 25일자 마을회의에 기록되어 있다. 물가폭등으로 인상폭이 큰 만큼 마을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가폭등에 따라 한꺼번에 10배를 인상하고 있다. 가기세를 별제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1947년의 경우 가기세가 330원, 별제 비용이 2,868원이었다. 가기세가 필요한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이다. 10배 인상한 결과도 가기세 3,600원, 별제 비용 6,245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말았다.

1. 家基(土起)黃金 調定の件

司會 李麒年로부터 家基黃 調定을 附議하니 鄉員 一般은 現時物價暴騰함에 照鑑하여 前年黃額을 標準으로 하고 十倍를 加하여 徵收할 것

으로 可決하다(調定收納簿 別紙와 如함)

그 뒤로도 가기세가 별제 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1969年 3月 12日자 회의록 '풍조구역 출세의 건'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나오기도 한다. 출세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논의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상홍 : 풍조구역 대금은 금년도 별제향회(別祭鄉會) 시 비용에 의해서 부족한 것을 명년부터는 부족액을 고려 첨가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다.

별제 비용이 모자란 것만큼 이듬해 풍조 출세에 가산하여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풍조 출세금은 포제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촌로들의 기억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벤홀'이 국가 소유로 넘어가고, 포제가 별제로 합시되면서 풍조세를 별제 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

別祭 비용에 관해서는 1949년 1월 20일 총회 네 번째 안건 '里經費 報告의 件'에서 다룬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司會 李求勳氏로부터 本件을 左記와 如히 報告하니 鄉員 一同은 異議 없이 決算할 것으로 可決되다

自四二八一年 九月 二十二日 至四二八二年 一月 九日

一. 接待

總經費 金四萬六千〇貳拾圓也

二. 民保團醴出金 壹萬圓也

三. 別祭經費 壹萬〇七百七拾八圓也

四. 大靜學聯醴出金 四千圓也

(合金 萬五千圓內 一. 里員□四千圓 一. 民保團員□□□□圓 一. 奉援會及□壹千圓)

總支出合計金七萬〇七百九拾八圓也

三항에 “別祭經費 壹萬〇七百七拾八圓也”라고 하였으니 이해 별제 비용으로 10,778원이 소요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한 회계연도 마을 공금총액 70,798원의 1/7에 해당하는 정도지만 집대비를 제외하면 가장 큰 지출항목이다.¹¹⁾

별제 비용은 곧 物種代를 말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환/원)¹²⁾

年度	1938	1939	1941	1943	1945	1947	1948
	1949	1956	1957	1958	1962		
金額	13.67	19.71	37.07	58.66	349.10	2,868	6,245
	10,778	14,650	14,650	10,500	1,402		

별제 비용은 물가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정에 따라 물종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39년과 1941년 사이에 비용이 갑자기 늘었다. 그러나 다음 시기에는 상승폭이 이보다 더 컸다. 1941년부터 1956년까지는 매년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47~1949년 경우를 보면 한 해 사이에도 만만치 않은 변동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마을의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경우도 있겠지만 변동폭이 큰 시기는 그만큼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물가폭동이 주요인이다.

포제 제비 관련하여 마을회의에서 논의한 기록은 전혀 없다. 포제 비용은 風藻糞로 충당되었다. 풍조세는 바닷가에서 채취한 風藻를 팔아

11) 이 당시 집대비가 이처럼 과다한 것은 4·3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정은 기회를 달리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12) 이하 관련 표를 볼 때는 화폐개혁으로 인한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53년에는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에는 10환을 1원으로 내렸다. 1953년에는 100분의 1, 1962년에는 10분의 1로 모든 은행권의 액면을 낮추고 화폐의 호칭도 원과 환을 번갈아 바꾼 셈이다.

얻은 수익에서 일정액을 걷는 것을 말한다. 바닷가에 설정된 風藻區에 대한 채취권을 개인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받아들인 수익금 의미하기도 한다. 風藻는 곧 '뭍'이기에 흔히 '뭍통세'라고 한다. 풍조에 대해서는 매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풍조세와 포제비 어떻게 관련되고, 그 가운데 얼마를 포제비용으로 지출하는지는 미회의의 논의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역은 회계장부에나 아 있을 뿐이다.

매해 거둔 풍조세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환/원)

年度	1939	1941	1942	1943	1944	1945	-
	1947	1948	1949	1956	-	1958	-
	1962						
金額	100.19	200	200.20	205.60	205.60	411.20	-
	8,022	25,080	25,080	16,520	-	53,000	-
	2,508						

가기세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다. 포제 비용으로 쓰다 남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쓰다 남은 돈은 모두 마을 공금으로 귀속된 다른 곳에 쓰였다.

포제 비용은 별제 비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차리는 제물이 다르므로 비용도 비슷하게 소요되었다. (단위 : 환/원)

年度	1939	1941	1942	1943	1944	1945	19
	1947	1948	1949	1956	1957	1958	
	1962						
金額	18.04	29.22	50.08	63.62	-	416.15	
	3,381	6,470	-	13,300	10,630	12,930	
	1,916						

시기별 변화 추이는 별제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본격적인 분석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별제와 관련하여 중시되는 사항 가운데도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제청 선정, 정성 기간 설정 등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도 집사 선정 건과 함께 마을 대표와 원로들이 위임받아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Ⅲ. 회의록을 통해 본 마을제의 변화 양상

1. 별제와 포제의 위상 변화

별제는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마을회의록을 통해서도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별제를 중시하였는지 쉽사리 파악할 수 있다.

별제 집사 선정은 매해 정월 처음으로 마련한 마을총회에서 다루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인정되었다. 여러 안건 가운데 제일 처음 안건으로 다루었다. 다른 안건들도 중요한 것이지만 배민 고정적인 논의 기회가 마련되거나 고정적인 순번을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949년부터 1954년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곧 이 회의는 별제 집사 선거를 위하여 마련된 이른바 별제 향회인 셈이다. 그만큼 별제와 그 집사 선정을 중시하였다는 말이다.

별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징후도 바로 별제 집사 안건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1950년대 들어가면 별제 집사 선정 안건이 두 번째 안건으로 밀리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1965년, 1969년의 경우이다. 별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고 있다는 사실이 감지된다.

1970년대부터는 별제 집사 선거 건이 안건으로 상정된 기록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별제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별제 집사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 시기부터는 마을 총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이장을 비롯한 임원, 유지 등만 참석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회의 참석자가 기존의 강위, 두노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굳이 과거와 같은 논의 절차가 필요 없게 된 셈이다.

포제는 별제에 비하여 중요도가 떨어졌다. 별제 집사 선거에 대해서는 매해 정월에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지만 포제 관련 회의를 하였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 이는 곧 포제는 별제만큼 중시되지 않았다는 근거이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잠시 기록된 바 있을 뿐이다. 1950년대 초 잠시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는 마을회의에서 포제 제관 선정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을 찾기 어렵다. 회계장부에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포제 집사 선정과정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포제 집사 선정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별제 집사가 그대로 담당하였을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집사기를 살펴 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포제 집사 선정시 함께 선정해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50년대초 포제 집사를 따로 선정한 기록이 있으니 그 가능성이 많지 않다. 아니면 포제에 임박해서 강위와 두노 등이 선정하였을 수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답이다. 좀더 조사를 진행해본 뒤에야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듯하다.

포제 준비나 행제 등 모든 것은 별제와 그다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제 집사의 수나 책무는 별제 집사의 경우와 같았다. 헌관의 경우 성씨를 안배하고, 두노를 역임한 이여야 헌관이 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다르지 않았던 듯 하다.

실제 제의로 한정해서 본다면 사계리에서는 포제에 대하여 별제와 큰 차이를 두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포제 집사 선거 안건이 마을회의에

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포제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 초에 포제 집사 선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잠깐이나마 포제를 별제와 상응하는 수준의 제의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2. 별제와 포제의 양상

앞에서 별제와 포제의 위상이 점차 바뀌어왔음을 보았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제의에서도 그러한 변화의 영향이 발견되는가를 주목하여 살펴야 하겠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마을제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록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관례화된 사항이면서 사람들의 이해에 그다지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기록에 남지 않은 셈이다. 마을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회계장부, 집사기, 물종기 등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사람들의 기억을 살려내는 수밖에 없다. 마을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이를테면 제단을 이전한 일, 포제를 별제에 통합해서 지내게 된 일 등은 회의록에서는 찾아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 내력을 기억하고 있다. 먼저 사람들의 기억을 종합해서 사계리 마을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승되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별제에서 모시는 신위는 모두 셋이다. 太歲·里社·田祖이다. 가운데 里社를 모시고 좌우에 太歲와 田祖를 모신다. 제사를 모시는 순서는 太歲, 里社, 田祖 순이다. 이는 곧 신격의 優劣에 따른 것이겠다. 太歲는 한 해의 인간사를 관장하는 신이다. 里社는 마을 社稷神으로 마을을 지켜주는 신으로 관념한다.¹³⁾ 田祖는 농사를 돕보아주는 신이다.¹⁴⁾ 지금

13) 里社는 조선 태종 당시 祀典을 정비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百姓들로 하여금 民間에서 지내던 山川祭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대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생겼다. 이에 府州郡縣에 洪武禮制에 依據하여 社稷壇을 세우고 春秋로 行祭도록 하고, 庶民에 있어서는 역시 里社에서 行祭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때 里社는 곧

도 별제에서는 이들 세 신위를 함께 모시고 있다.

별제를 지내기에 앞서 '별젯상회'를 열어 제관과 집사를 정하였다. '별젯상회'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별제 집사 선거 건'을 안건으로 다룬 마을회의를 말한다. 집사 선거는 대개 銓衡委員制를 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회의록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형위원제를 택한 것은 후대의 일이고 본래는 강위와 두노를 거쳐 구장에게 위임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마을회의록에서는 집사 선정을 위임 받은 구장이나 원로들이 어떠한 기준을 중시하였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촌로들의 기억을 토대로 하여 정리하면 비교적 상세한 내력을 파악할 수 있다. 초헌관은 전직 구장이나 이장이 맡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을회의록에도 관련 기록이 발견되나 구체적이지 않다. 3헌관은 金, 李, 姜, 柳, 趙, 梁씨 등 大姓을 안배하여 선정하였다. 제집사도 역시 各姓바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제관과 집사 선정에 따른 논란의 실마리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¹⁵⁾

2005년도의 경우 제관과 집사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典祀官, 執禮, 大祝, 贊者, 謁者,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執事, 執事, 執事, 執事

鄉村(里)에 마련된 社稷壇을 意味한다. 박경하, "朝鮮後期 儒教祭儀와 土着信仰祭儀와의 關係: 濟州道 醴祭壇(里社壇)과 本鄕堂을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7(한국역사민속학회, 1998) 참조.

- 14) 유사 사례가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興海邑 南城里에서는 조선조 후기까지 못가에 있는 성황당에 군수가 직접 참여하여 성황신과 田祖神에게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폐지되고 이 유습은 伐泉마을로 옮겨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때 제관 선정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제관 선정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집사기>를 검토해본 결과 성씨별 안배는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모두 16명이다. 특별한 책무가 부여되지 않은 넷을 제외해도 12명에 이른다. <執事記>를 검토한 결과 책무를 부여받은 12집사의 순서나 명칭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다. 1984년까지만 해도 네 執事 대신 司奠, 盥洗位, 飯監, 掌牲令 등 구체적인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 있었다. 점차 이들이 하나 둘 執事로 대체되다가 1990년대부터는 모두 執事로 대체되어 버렸다.

별제는 정월 첫 辛日에 지낸다. 제일을 정할 때 立春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일을 앞두고 제관과 집사는 제청에서 합숙하며 정성을 하였다. 제단 가까이 있는 개인집 가운데 깨끗한 곳을 골라 제청으로 삼았다. '올래'에 금줄을 쳐놓고 부정한 이의 출입을 막았다. 1972년도까지는 사흘 정성을 하였고, 그 뒤로는 이틀 정성을 하였다.¹⁶⁾ 특별히 목욕재계를 하는 일은 없었다. 제관과 집사가 거처하는 방을 따로 구분하지도 않았다.

모든 제물은 전사관이 준비하였다. 본래는 소사가 맡아 하던 일이다. 희생은 돼지이다. 털을 제거하는 방법만 다를 뿐 일반적인 방식 그대로 돼지를 처리한다. 털은 끓인 물로 끼얹은 뒤에 칼로 밀어가며 깨끗하게 벗겨낸다. 이어 '열두째'로 도려낸 뒤 다시 각 부위를 조금씩 분리한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별제의 경우 신위가 모두 셋이기 때문이다. 태세신에게는 머리, 전각, '승'을 올리고, 이사신에게는 목, 갈비, '접착'을 바치며, 전조신에게는 후각, '일른', '비피'를 올린다.¹⁷⁾

본래 '벤홀' 지경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단은 따로 없었으나 일정한 곳에 '젯자리'를 깔고 제물을 차렸다.¹⁸⁾ 1946년경 지금의 '상뫼동산' 지경에 제단을 마련하여 이곳으로 제장을 옮겼다. 이곳에는 울타리를 높이 둘렀

16)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때 별제를 중단한 적도 있다고 한다. 정성 기간이 축소된 것도 그 여파가 아닌가 한다.

17) 각 신위별로 '열두째'에 해당하는 부위를 골고루 나누어 올린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18) 제단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 진설을 할 때 空方을 향하는 예가 많다.

을 뿐 아니라 제단도 따로 마련하였다.

포제의 대상신은 里醮之神 하나이다. 제일은 6월 첫 丁日이다. 다른 마을과 달리 亥日에 지낸 바는 없다고 한다. 제단은 별제와 같은 곳¹⁹⁾ 이용하였다. 희생은 돼지이다. 끓는 물로 털을 제거하고 내장을 빼낸 후²⁰⁾에 통째로 올렸다. 제관 선정은 별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¹⁹⁾ 나머지 사항은 다른 마을 포제와 같다.

별제나 포제의 경우 제관들이 입는 제복은 같다. 처음에는 집에서²¹⁾던 도포를 그대로 입었으나 요즘에는 마을에서 따로 마련한 靑衣를²²⁾는다. 제기도 과거에는 제청으로 선정된 개인집의 그릇을 빌려 썼으나²³⁾ 요즘에는 마을회관에 보관해두고 있다.

제청에서는 집례의 주도하에 제집사의 인원 파악, 물종 점검 등이²⁴⁾루어진다. 제일 전날에는 제단을 미리 청소해두고, 희생을 처리하며,²⁵⁾문을 작성한다. 밤 10시경에 제관과 집사 모두 함께 제단으로 출발한²⁶⁾10시 30분경부터는 진설을 한다. 자정이 되면 행제를 시작한다. 笏記²⁷⁾따르면 祭次는 奠幣禮-初獻禮-讀祝-亞獻禮-終獻禮-撤籩豆-燎 등으로 이루어진다. 초헌·아헌·종헌례는 太歲-里社-田祖 순²⁸⁾로 진행한다. 별제는 1시간, 포제는 30분가량 소요된다. 행제가 끝나²⁹⁾제청으로 옮겨 음복을 한다. 음복은 제관과 집사만 하는 것이 관례이³⁰⁾음복을 마친 뒤에는 희생을 나누어 가지는 이른바 분육을 행한다. 헌³¹⁾은 두 근, 집사는 반 근 가량씩 나누었다.

별제 축문은 다음과 같이 쓴다. 2005년도의 사례이다. 한글로 음을³²⁾아두었다가 참고하며 고축한다.

維歲次乙酉正月甲子朔初八日辛未幼學具東玄

19)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를 만나지 못하였다. 의견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기록과도³³⁾치하지 않았다.

敢昭告于

太歲之神·里社之神·田祖之神 伏以 洋洋乎德 立我烝民 時維春正 歲
巧云始 若時昭事 敢有不欽 蘋藻雖微 庶將誠意 於赫三靈 特垂陰佑
除灾降康 庶作樂鄉 謹以牲幣 尊獻虔告 尚

饗

별제 축문에서 별다른 특징이 발견되지 않는다. 흔히 보는 포제 축문
과 큰 차이가 없다. 세 신위에게 동일한 기원 사항을 적어 고축하고 있
다. 기원 사항도 간략한 편이다. 세 신격은 성격이 다른데, 그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별제를 중시해온 까닭은 그 신위를 보면 쉽사리 파악된다. 즉 별제를
중시하였던 것은 마을을 지키는 里社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관심사와 두
루 관련되는 신격을 모시기 때문이다.

마을회의에서 그토록 집사 선거를 중시한 까닭은 적절한 안배가 필요
하였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납득하여 불만이 없게
할 필요가 있었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를 하면서 구성원의 반
목을 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관례화된 절차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주목되는 바는 성씨별 안배는 철저하게 하되 동네별 안배는 따
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네들이 떨어져 있지 않고 또한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마을 행정과 관련해서는 동네별 대표
를 따로 선정하기도 하지만, 제의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
고 있는 셈이다.

포제를 별제에 하사하였다고 하니 몇 가지 변화가 뒤따라야 할 터이
다. 별제에서 모시는 신위 셋에 里酬之神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진설할 때 네 신위에 각기 진설해야 하고, 홀기와 축문도 이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수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제단에서 포신을 위한 배려를 찾기

어렵고, 물종기, 흘기, 축문 어디에서도 醮神에 대한 언급을 찾기 어렵다. 포신을 위하여 흘기와 축문을 수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흘기나 축문이 어차피 신위의 성격에 따른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위별로 고축을 따로 하지 않았으니 신위별로 축문을 따로 마련할 필요조차 없었다. 단지 신명만 삼입하든 그만인 것이다.

결국 포제를 별제에 합쳤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醮神의 자는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포제를 그만 두었다는 뜻이다.²⁰⁾ 포제를 그만 두었으면서 왜 합사하였다고 말하는가. 그 동안 지내오던 제사 폐지하는 데는 심리적인 부담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지하면서도 합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제단을 바닷가 '벤홀'에서 마을 위쪽 동산으로 옮겼다. '벤홀'은 里社나 포제 장소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을 듯하다. 그런데 본래 별을 '벤홀'에서 지냈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터이다. '벤홀'은 제의 제장으로서의 적절한 곳이었을 수 있다.²¹⁾ 그렇다고 하면 제단 전으로 인하여 별제의 성격에서는 벗어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 셈이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유교식 마을제의 대체적인 변화 방향은 포제 중시하고 포제 중심으로 합사하여 별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별제를 존속시키면서 포제를 취하는 합사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셈이다. 여러 모로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20) 기존 조사 자료에서는 네 신위를 모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명칭은 셋만 제시된다. 마을사람들도 포제를 별제에 합사하였다고 하면서도 포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1) 별제를 늦은 시기까지 지내던 곳은 대개 바닷가 마을이고 그 제장도 대개 바닷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식 마을제의 명칭으로 흔히 포제와 더불어 里社祭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里社祭와 포제를 달리해서 마을제를 지칭하다가 하나로 통합하면서 시기는 정월을 취하고, 제의 명칭은 里社祭 혹은 포제를 선택적으로 취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사계리에 서 별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마을의 里社祭와 같은 것이라면 사계리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별제의 성격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제주도 일반과 같은 변화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변화 양상을 취하는 것인지 파악될 수 있겠다.

IV. 마을제 연구의 보완과 확장을 위하여

회의록은 구전을 보완해 줄 소중한 자료이다. 구전보다 오히려 더욱 실증적인 자료일 수도 있다. 마을 사람들이 별제와 포제를 어떻게 달리 보았는지는 안건 상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별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동안 마을제 관련해서는 촌로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연구하여 왔다. 촌로들의 기억은 대체적인 양상은 전달해주었지만 구체적인 데 이르러서는 부정확한 경우도 있었다.²²⁾ 마을회의록은 촌로들의 기억을 돕고 그 틈새를 메우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상호보완적인 자료로 보아 활용하는 것이 좋다.

22) 포제를 별제에 합사하였다고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포제를 별제에 합사하였다고 하는데 본래 의도가 그러하다고는 해도 실제로 적절하게 합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축문>, <홀기>, <제물진실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이다.

1. 별제의 성격

그동안 별제의 성격이나 그 실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사계리의 사례는 전형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소중한 단서다수 제공한다.

사계리는 별제에서 太歲·里社·田祖 세 신위를 모신다. 도내에서 歲, 田祖와 같은 신격을 모시는 사례는 그다지 흔한 것이 아니다. 이 읍 남읍리, 표선면 성읍리의 경우에도 세 신위를 모시지만 그 성격은 계리의 경우와 다르다.²³⁾ 대개 별제는 전염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고 기원하는 제의로 전승되고 있다.²⁴⁾ 그래서 무속적인 성격이 강한 면도 있다. 그러나 사계리 별제의 경우 그와 같은 神職을 맡는 신격 모시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계리 별제는 다른 마을의 별제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제의 제일이 辛日인 것은 祈穀祭의 遺風인지, 무속의례인 당굿 영향인지 분명치 않다.²⁵⁾ 기곡제는 나라에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던 사, 곧 기풍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 포제 한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농경의례에 속한다는 점을 함께 고수도 있다.²⁶⁾

제일을 선정할 때 굳이 입춘을 고려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유 마을제의 제일은 대개 입춘을 고려하여 택일을 한다. 입춘은 새 절기

23) 이웃 덕수리에서도 太歲를 모신다. 동일한 생활권이었던 데서 연유한 것인 듯
24) 남읍리의 西神, 표선 성읍리의 染疾神, 성산 고성리의 司命大神, 덕수리의 另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5) 기곡제는 나라에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던 제사로 祈穀大祭·新年祭·祈豐 고도 불렀다. 중국에서 전래되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是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 지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중국의 예를 따라 정월 첫 日 지냈다.

26) 포제는 본래 사람과 곡식을 해하는 신에게 지내던 제사이다.

므로 대개 입춘이 지난 뒤에 마을제를 지낸다. 太歲神이 新舊間에 인간 세계를 잠시 떠나는 신격으로 관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제물을 차리되 희생을 '열두째'로 분육하고 이를 각 신위에게 나누어 올리는 점도 주목되는 바다. 무속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당에서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사례와 유사하다. 구좌읍 행원리에서는 포제를 지내기 전에 남당 중이대사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돼지고기를 바친다. 행원리 남당의 사례도 무식과 유식이 결합여진 사례라는 점에서 함께 주목해야 할 사례이다.

사계리 별제는 유교식 제의이면서 무속식 성격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사계리 별제는 조선 태종대 이후 향촌에 자리 잡게 된 里社의 전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드물게 里社·田祖를 함께 고시는 점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돼지를 '열두째'로 나눈 뒤에 제물로 올리는 것은 무속의 영향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사계리 별제는 무속적 성격이 강한 別祭와 조선 태종 이래의 里社祭가 결합된 상태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별제의 모습은 명칭에나 남아 있으며 제의 내용은 里社祭의 성격을 주로 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2. 춘제/추제, 정포제/농포제의 관계

마을제는 시기와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봄을 맞이하면서 지내는 것을 春祭, 가을을 맞이하면서 지내는 것을 秋祭라 하는 예가 있다. 정월에 지내는 포제임을 내세워 正醮祭, 풍농을 기원하는 제의임을 내세워 農醮祭라 구분하는 예도 있다. 그렇다면 춘제, 추제, 정포제는 모두 春 시기를 중시하여 붙인 명칭이라는 말이다. 농포제만 그 성격을 중시한 명칭인 셈이다.²⁷⁾ 시기를 중시한 명칭이 대세를 이루는 듯하나 이는

제의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

본래 마을제가 시기를 달리하여 치러진 것은 제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계리에서도 한해 두 차례에 걸쳐 성격이 다른 마을제를 거냈다. 사계리에서는 별제를 春元別祭, 正月別祭라 하고, 포제를 農醮祭, 六月醮祭라고 한다. 春元別祭, 正月別祭, 六月醮祭는 모두 제의 명칭 앞에 시기를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農醮祭는 제의 명칭 앞에 그 성격이 덧붙여 밝힌 셈이다. 달리 별제를 '里社祭', 포제를 '里醮祭'라고 하는 것도 있는 듯하다. 이것은 마을제라는 점을 중시한 명칭이다. 제의 명칭이 있어 사계리의 경우도 제주도 일반의 경향을 좇아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계리에서는 제의의 성격에 따라 그 명칭도 분명히 구분하여 쓰이고 있다. 사계리 마을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대표적인 것은 별제와 포제이다. 春元別祭, 正月別祭, 六月醮祭, 農醮祭 등의 별칭은 편의상 쓰인 것일 뿐이다. 이처럼 용어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쓸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제의의 성격이 비교적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별제는 기본으로 삼는 주요 제의에 대하여 따로 벌이는 제의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달리 別屋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정기적으로 벌이던 유교식 마을제로는 里祭(정포제), 농포제, 별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⁷⁾ 그리하여 세월의 흐름에 따라 대개 시기는 里社祭를 벌이던 정월로, 명칭은 포제를 중심으로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계리는 제의 시기와 내용은 里社祭 따르고, 명칭은 별제를 따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마을제의 대체적인 변화 양상은 里社祭, 農醮祭, 別祭 등 별도로

27) 정포제는 농포제에 대하여 정월에 벌이는 포제라는 의미에서 붙인 것이라고 보 것이 옳다.

28) 비정기 마을제로는 祈雨祭, 除虫祭 등을 들 수 있다.

지던 제의들이 점차 하나로 통합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別祭가 저 통합되고 이어 나머지 들이 통합되었으리라 본다. 그 실상이 분명 않은 탓에 용어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사계리의 사례를 통하여 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아울러 용어의 혼란을 피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의나 용어가 본래부터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니므로 변화해온 내력을 악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을제는 지금도 다양한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다. 흔히 마을제는 무식 유식으로 2분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간단하게 말할 없다. 마을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식 마을제는 기제/비정기제로 나뉘고, 정기제는 다시 시기에 따라 춘제/추제 혹은 포제/농포제로 나뉘고, 여기에 성격이 다른 별제가 추가되는 양상을 이다. 춘제/추제, 정포제/농포제가 어떻게 성격을 달리하며 어떠한 변를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낸 바가 없는 듯하다. 별제에 대해서도 려진 바가 많지 않다. 비정기제에 대한 관심은 더 적은 실정이다. 이 발표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언급할 때 적극적으로 기록 자료를 찾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할 뿐이다. 그 예로 사계리의 경우를 고 마을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마을회의록에 기록된 바를 토대로 삼아 주민들의 증언을 함께 곁들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 이와 같이해서 얻은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별제와 포제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에 내하이 시대에 미리 인식이 민회해온 명칭도 비이힐 수 있었다. 제를 중단하게 된 이유도 간접적이거나 추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앞으로 반드시 밝혀야 할 과제도 있다. 첫째는 포제 중단의 구체적인 유이다. 생업문화의 변화가 농포제의 중단으로 이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견해의 적합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²⁹⁾ 둘째는 마을회의록의 이유이다. 왜 다른 지방에서는 흔치 않은데 제주도에서는 어느 마을 회의록을 남기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

주제어

마을회의록, 마을제, 사계리, 별제, 포제, 가기세, 풍조세

29) 이것은 고평민 선생의 의견이다. 주목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 탁견으로 판

Abstract

The Change of Maulje(Village Celebrant) Looked through the Village Minutes ; In the case of Sakye-ri, Andok-myun, Jeju

Kang, Jeong-sik

This paper studies on some aspects of changement in Maulje looked through the Village Minutes of Sakye-ri. Many villages in Jeju have their own village minutes which contain the important decision-making processes of all village people. The Village Minutes shows some details of village affairs. One of the main subjects of village minutes is Maulje.

The selection of chief priest was very important. The chief priest was chosen through general meeting and senior meeting of the village. To be selected as chief priest was very honorable for himself and for his family, because Maulje was not to be met with every day.

Preparation of the cost of Maulje and its use was very important, too. For, it handled with the communal endowment. In Sakye-ri, there were two Confucian Maulje, once in January(it was called "Pyulje") and once in June(in lunar calendar, called "Poje"). The one was allotted by Kagi-tax meaning the rent from communal land of the village, and the other by Pungjo-tax meaning the income from the seaweeds.

Later, Poje was put together with Pyulje. In reality, Poje was suspended. However, village people never speak out the reality. They want to be seen off the existence of the tradition.

Pyulje was more important than Poje in Sakye-ri. We can find it in the Village Minutes. Compared to the documents on Poje, those on the Pyulje were abundant in details. The result is that, I think, Poje was interrupted and Pyulje remained.

Key Words

village minutes, village celebrant Sakye-ri, Pyulje, Poje, kagi-tax, pungjo-tax

교신: 강정식 (X) 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E-mail: bonpuri@cheju.ac.kr 전화: 016-692-9200)

최초 투고일 2006. 1

최종 접수일 2006. 2